

축산물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중 위해축산물회수방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위해 축산물 회수는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축산물 회수는 영업자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영업자와의 협조체계 구축 없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가 진행될 수 없다.
-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축산물 회수는 신속한 정보 입수와 함께 지속적으로 영업자의 회수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 위해 축산물 회수의 종류

○ 자발적 회수 (자진 회수)

자발적 회수는 영업자가 스스로 위해 또는 위해우려 축산물을 회수하는 것을 말함

○ 회수 명령 (강제 회수)

회수 명령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위해 또는 위해우려 축산물을 회수하게 하는 것을 말함

■ 회수 대상 축산물

회수대상 축산물은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한 회수 대상 축산물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그리고 용기등의 규격등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과 용기 등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포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포함)

○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축산물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영업의 허가를 받

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

○ 병원성 미생물, 유독 물질 등에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가 필요한 축산물

상기 축산물에 대해서 반드시 회수만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 및 여건에 맞게 회수, 압류, 폐기 또는 기타 공중위생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여 조치하여야 함

■ 압류·폐기·회수 또는 유통중지 비교

- 통상적으로 위해가 소규모(국소적)일 경우 압류·폐기 조치하고
- 일반적으로 위해가 범발적일 경우에는 회수 또는 유통중지 조치 실시하나,
- 위해의 정도, 유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위해 조치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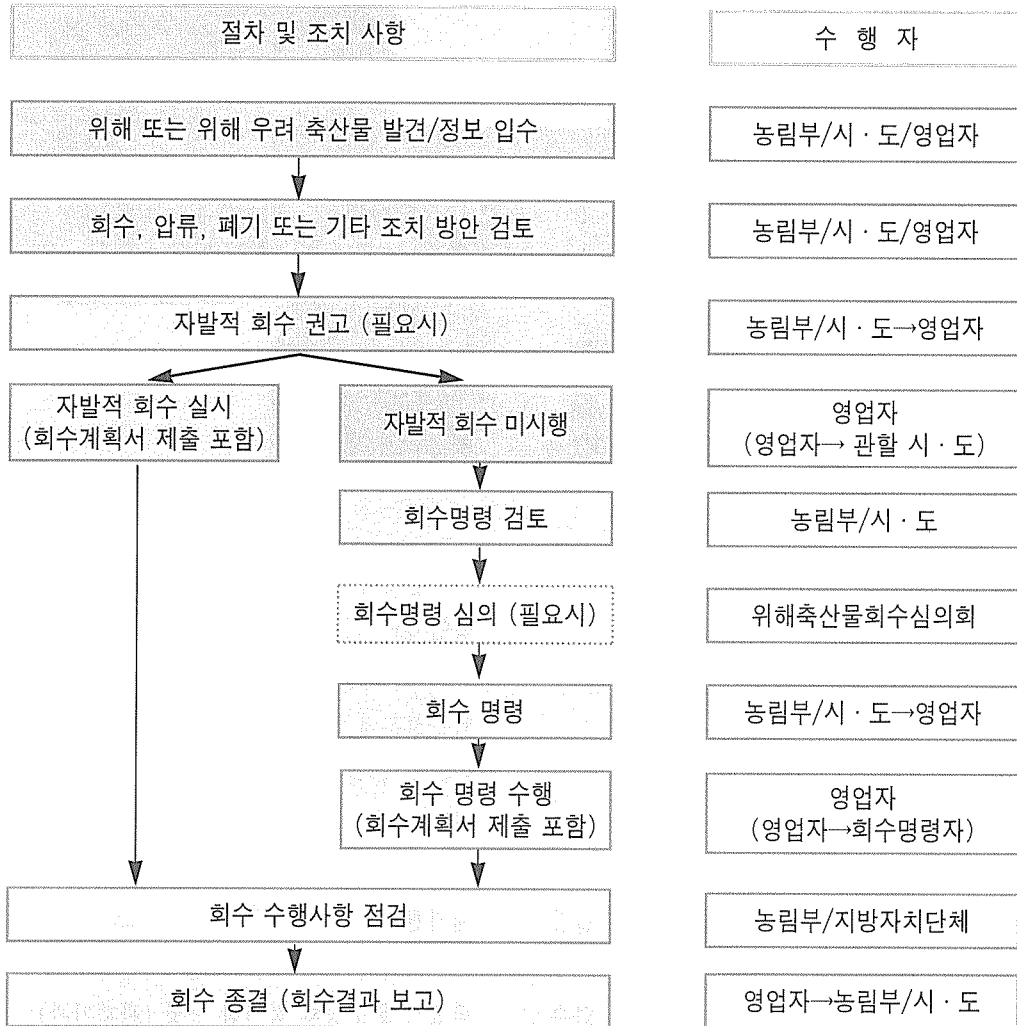
방 법	조 치 권 자	근 거(축산물가공처리법)
압류·폐기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	법 제36조제1항
강제 회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법 제36조제2항 및 농림부령*
자진 회수	영업자	농림부령*
유통 중지	농림부장관	법 제42조

* 농림부령 : 위해축산물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칙(2000.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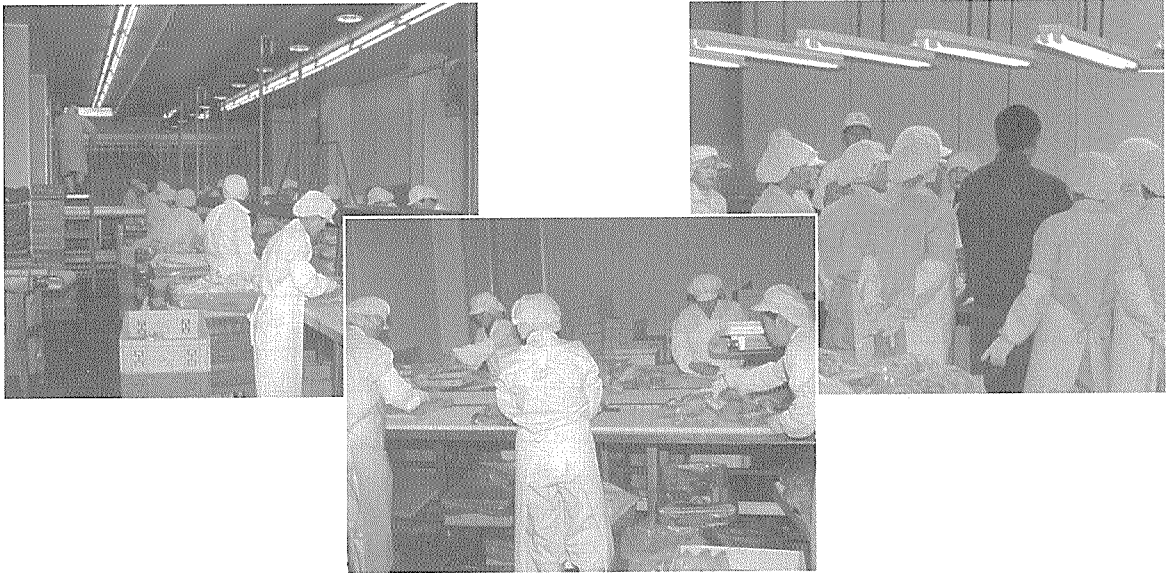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회수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회수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1996) 축산물가공처리법 (1998)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연방식육검사법 연방가금제품검사법 연방난가공품검사법
회수 형태	()은 회수제도도입연도 자진 회수(자발적 회수) 강제 회수(회수 명령)	자진 회수
회수 공표	영업자	영업자
회수 책임	영업자	영업자
감독 조직	보건복지부 식약청 : 일반식품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 축산식품	보건부 식약청(FDA) : 일반식품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 축산식품
벌칙 조항	강제회수 : 징역 또는 벌금 자진회수 : 벌칙조항 없음	자진회수 거부시 법원에 압류권한부여 요청하고, 법원에서 압류명령시 압류
회수 사례	복지부 : 1건 (자진회수) 농림부 : 4건 (강제1, 자진3)	보건부(FDA) : 3,248건 ('86~'99) 농림부(FSIS) : 515건 ('84~'99)

■ 위해 축산물 회수의 방법 및 절차



- ※ 영업자는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축산물 발견/정보입수시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야 함
- ※ 영업자는 관계기관의 회수 권고 없이도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할 수 있음
- ※ 회수명령은 반드시 자발적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 상기 회수방법 및 절차는 일반적인 모델로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고 선택적으로 활용



■ 위해 축산물 회수시 조치 사항

- 위해/위해우려 축산물 정보입수/발견 사실 통보 (관계기관↔영업자)
- 위해/위해우려 축산물 관련 업체 역학조사 실시 통상 국내 축산물의 경우 실시 (관계기관)
- 조치사항(회수, 압류, 폐기, 유통금지 등) 결정 및 통보(권고) (관계기관→영업자)
- 자발적 회수시 영업자에게(는) 자발적 회수 권고(실시) (관계기관/영업자)
- 필요시 회수명령 검토(필요시 회수심의회 개최) 및 실시 (관계기관→영업자)
- 회수대상 축산물의 품목, 수량 결정 (관계기관 또는 영업자)
- 필요시 영업자와 협조하여 회수대상 축산물의 판매처 입수 (영업자→관계기관)
- 업체내에 회수전담팀 구성 권고 (관계기관→영업자)
- 회수대상 축산물의 집합장소 설정 (영업자)
- 일간신문에 회수안내문 게재 (영업자)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수안내 (영업자+관계기관)
-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서 제출 받음 (영업자→관계기관)
- 회수계획서 보고 (관계기관→농림부)
- 필요시 회수상황 점검팀 구성 (관계기관)
- 일일 회수상황 점검 (영업자+관계기관)
- 관계기관 입회하에 축산물에 대한 폐기/반송/매몰 등 조치 (영업자)
- 회수종결 여부 최종 결정 (영업자+관계기관)
- 영업자로부터 회수결과 보고서 제출 받음 (영업자→관계기관)
- 회수결과보고서 보고 (관계기관→농림부)

※ 상기 조치사항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활용

■ 위해 축산물 회수시 착안 사항

- 회수 책임자는 “영업자”이며 지도○감독은 “시○도, 농림부”
- “자발적 회수” 또는 “회수명령” 모두 회수 책임은 영업자임
- “자발적 회수”는 영업자 관할 시·도에서 지도○감독 실시
- “회수명령”은 회수명령권자(농림부 또는 시·도)가 지도○감독실시
- 회수사항 점검은 단기간내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실시
- 유통중인 회수대상 축산물이 소비되기 전에 최대한 회수 실시
- 일시에 대단위로 실시함으로써 중복적으로 판매업소 점검 방지
- 정확한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
- 필요시 회수대상 축산물의 보관창고의 입출고 대장 확인으로 유통경로 파악
- 필요시 회수대상 업체 수위실의 출입자 관리대장 확인으로 유통경로 파악
- 필요시 확인된 거래처를 중심으로 회수대상 물품 유통경로에 대한 설문
- 필요시 유사업종의 관계자로부터 회수대상 물품 유통경로에 대한 설문

- 필요시 식육판매업소의 거래내역서 확인으로 유통경로 파악
 - 필요시 기타 생산/수입서류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유통경로 파악
 -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회수업체의 협조체계 구축
 - 회수지연시 소비자, 업체, 정부 모두 손해임을 강조
 - 회수업체에서 가능한 회수전담팀(직원) 구성을 권고
 - 협조체계 미구축시 영업자에게 무차별적인 거래업소 점검이 실시될 수 있음을 주시시켜 협조체계 구축 유도
 - 정확하고 신속한 회수 정보의 공개 및 공유
 - 정확한 회수사유, 회수대상 공개로 불필요한 불안감 등 유발 방지
 - 회수 정보는 가능한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
 - 기타 착안 사항
 - 필요시 수입업체인 경우 수출회사와 독점계약 여부 확인으로 유통경로 파악
 - 대리점, 판매업소는 중복점검은 배제하되 필요시 2회 정도의 점검은 실시
 - 수입물품의 경우 필요시 관세청에 수입현황 협조요청
 - 점검업소에 업체의 회수대상품 처리방안(보상 등) 공지로 회수 원활화 유도
- ※ 상기 착안사항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